



등록번호: 20100100300

최초등록일 : 2010.6.24.

최종등록일 : 2024.10.11

www.yum.com

타코벨 정보공개서

Taco Bell Restaurants Asia Pte. Ltd..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30일자

Taco Bell Restaurants Asia Pte. Ltd.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발행

Taco Bell Restaurants Asia Pte. Ltd.

99 Bukit Timah Road, #06-00 Alfa Centre, Singapore 229835

전화: +65-63331167

팩스: +65-63331126

목 차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Taco Bell**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별첨	
A	지적재산권
B	국제가맹점계약
C	가맹 점포 개점 일정
D	교육 프로그램
E	상품, 재료, 설비, 용역
F	가맹점 목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Taco Bell Restaurants Asia Pte. Ltd.	Taco Bell		99 Bukit Timah Road, #02-03 Alfa Centre, Singapore 229835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10.21	2014.10.21	해당없음	Anita McDonnell	+65-63331167	+65-63331126
	법인등록번호	해당없음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없음	

본건 가맹본부는 Taco Bell LLC Restaurants Asia Pte. Ltd.는 가맹본부로서 이하 “가맹본부”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법인, 파트너쉽 또는 기타 사업체를 불문하고 이하 “귀하”로 지칭합니다.

2008년 8월 1일 이전까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국가에서 Taco Bell 에 대한 재라이센스 허여권은 Yum! Restaurants Asia Pte Ltd (“YRAPL”) 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1일자로 유효하게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에 의거하여, 한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 가맹사업 형식으로 Taco Bell 점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재라이센스를 제 3 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권리는 Yum! Asia Franchise Pte. Ltd. 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운영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위 권리는 2014. 11. 1.부터 Yum! Asia Franchise Pte. Ltd. 로, 2019년 12월 31일부터 Taco Bell Asia Franchising, LLC 로 이전되었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Taco Bell Restaurants Asia Pte. Ltd,로 다시 이전되었습니다.

1.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의 궁극적인 모회사는 Yum! Brands, Inc. (“YUM”) 입니다. YUM 은 시스템 레스토랑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레스토랑 회사로 자사의 세(3)개 브랜드인 KFC, Pizza Hut, Taco Bell 로 조직된 다양한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회사명	본점 소재지	사업기간	대표자	전화번호/팩스 번호
YUM! 또는 YUM! Brands, Inc.	YUM! Brands, Inc.	1441 Gardiner Lane, Louisville, KY 40213, U.S.A.	1997 년~	David Gibbs	전화: 972 338 7700 팩스: +1 972 338 7726
Yum! Restaurants International, Inc	Yum! Restaurants International, Inc	7100 Corporate Drive, Plano, Texas, 75024, USA	1994 년~	Dyke Shipp	전화: 972-338-7700 팩스: +1-972-338-7726
Yum! Asia Franchise Pte. Ltd.	Yum! Asia Franchise Pte. Ltd.	99 Bukit Timah Road, #06-00 Alfa Centre, Singapore 229835	2008 년~	Lluis Ruiz Ribot	전화: +65-6333-1167 팩스: +65-6333-1126
Kentucky Fried	KFC Corporation	1900 Colonel Sanders Lane,	1971 년~	Tarun Lal	전화: 502-874-2944;

Chicken or KFC	(자회사 및 계열회사)	Louisville, KY 40213			팩스: 502-874-2005
Pizza Hut	Pizza Hut, LLC (자회사 및 계열회사)	7100 Corporate Drive, Plano, TX 75024	1958 년~	David Graves	전화: 972-338-7398; 팩스: 972-338-7637
Taco Bell	Taco Bell Corp.	1 Glen Bell Way, Irvine, CA 92618	1962 년~	Sean Tresvant	전화: 949-863-8404; 팩스: 949-863-4842
Taco Bell	Taco Bell Asia Franchising, LLC	1 Glen Bell Way, Irvine, CA 92618	2020 년~	Jessica Holleran	전화: 949-863-4500 팩스: 949-863-2252
Yum! Restaurants Asia Pte. Ltd.	KFC Asia Franchise Pte. Ltd.	99 Bukit Timah Road #05-06, Singapore 229835	1998 년~	Lluis Ruiz Ribot	전화: +65-6430-2898 팩스: +65 6333-1126
The Habit Burger Grill	The Habit Restaurants, LLC	1 Glen Bell Way, Irvine, CA 92618	1969 년~	Shannon Hennessy	전화: 949-851-8881
KFC Asia Franchise Pte. Ltd.	KFC Asia Franchise Pte. Ltd.	99 Bukit Timah Road, #06-00 Alfa Centre, Singapore 229835	2017 년 ~	Lluis Ruiz Ribot	전화: +65-6333-1167 팩스: +65-6333-1126
Pizza Hut Asia Pacific Holdings LLC	Pizza Hut Asia Pacific Holdings LLC	7100 Corporate Drive, Plano, Texas, 75024, USA	2017 년 ~	Joseph Call	전화: 972 338 7700 팩스: +1 972 338 7726
Pizza Hut Asia Pacific Franchise Pte. Ltd.	Pizza Hut Asia Pacific Franchise Pte. Ltd.	99 Bukit Timah Road, #06-00 Alfa Centre, Singapore 229835	2017 년 ~	Steven Lee	전화: +65-6333-1167 팩스: +65-6333-1126
Yum! Restaurants International Holdings LLC	Yum! Restaurants International Holdings LLC	7100 Corporate Drive, Plano, Texas, 75024, USA	2005 년 ~	Jessica Holleran	전화: 972 338 7700 팩스: +1 972 338 7726

1.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가맹본부의 지난 3년간 인수 · 합병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1.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Taco Bell	
상 호	Taco Bell	
상표/서비스표	TACO BELL	등록번호 87398; 87730; 3388
상표(서비스표)	Taco Bell Bell Design No. 7 	등록번호: 19671
광 고		

1.5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i) 최근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재무 상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미화 1,000 달러, 부가세 미포함)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손실)
2021	3,346	3,168	178	3,976	(696)	(817)
2022	4,663	3,726	937	5,068	(133)	492
2023	67,235	4,172	63,063	7,768	(596)	(826)

이에 대한 근거는 별첨과 같습니다. 전체 매출은 제품/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아 총 수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산과 자본의 증가는 자본 투입을 통해 아시아 IP 를 6 천 2 백만 달러에 구입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ii)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i)을 보아 주십시오.

1.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i) 대표이사:

➤ Anita McDonnell

(ii) 이사:

➤ Anita McDonnell

(iii) 가맹본부의 각종 부서 및 가맹사업 지원 활동 내역:

부서	활동내역
개발	- 부지선정 및 평가와 레스토랑 기획 및 추적조사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 방식 및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 레스토랑 플로어 플랜 (내부 및 외부) 및 설계 기획 (색채, 좌석배치, 패턴, 로고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언 제공; 및 - 가맹점사업자의 개발담당직원 교육 및 개발에 관한 최상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개발 교육 및 회의 (Development College and Conferences)의 수행.
신규사업개발	- 신규 시장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TB 점포 개발 여부를 파악하고 TB 가맹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및 -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 및 가맹지원 제공.
레스토랑 전문	- 레스토랑 운영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 -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 인지도 및 건전성을 추적 조사하기 위한 방식 및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광고 효율성 측정, 레스토랑 운영실적 저하의 원인 파악,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신규제품 출시 실적에 대한 추적 조사, 레스토랑 및 영업수행에 대한 추적 조사 및 분석, 직원 관리 (채용, 보유 및 경력 계획) 및 직원교육, 실적 및 거래액에 대한 추적 조사; 및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담당직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최상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회의 (RE College and Conferences)의 수행.
마케팅	-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마케팅 달력의 개발 및 소비자 연구 및 분석 수행; - 브랜드 기준 개발 및 일관성 유지 모니터링; 및 - 가맹점사업자의 마케팅담당직원 교육 및 마케팅에 관한 최상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교육 및 회의(Marketing College and Conferences)의 수행.
재무/IT	- 레스토랑 손익 검토, 영업정보 분석에 대한 조언 및 지원, 보고 시스템 및 판매에 대한 접근 및 정보 제공, 연간 사업 검토 수행; - 레스토랑 POS 시스템 및 IT 요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조언과 지원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재무담당직원 교육 및 재무에 관한 최상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재무 교육 및 회의 (Finance College and Conferences)의 수행
연구개발	신규 제품 및 절차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및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및 그 처리를 지역 환경에 맞게 적응시킴.
품질보장	- 공급자, 유통업체 및 레스토랑 수준에 대한 기존의 또한 신규 공급자 자격 요건 검토를 위하여 고안된 가맹점사업자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제공; 및 - 제품 품질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공급자 감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연구개발/품질보장 담당 직원에게 적절한 식품취급절차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품질보장 교육 및 회의 (R&D/QA College and Conferences)를 수행.
공급자 체인 관리	- 식품, 설비 및 레스토랑 물자 및 가맹사업 관련 서비스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지방별 공급자 물색 및 확인; - 가맹점사업자가 유리한 사업 조건으로 공급자와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 및 - 가맹점사업자의 공급자 체인 관리 담당직원 교육 및 공급자 체인 관리에 관한 최상의 실전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공급자 체인 관리 교육 및 회의 (SCM College and Conferences)의 수행.
인사	가맹점사업자의 인사 담당직원 교육 및 인사 업무에 관한 최상의 실전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 교육 및 회의 (HR College and Conferences)의 수행.
감사	계약준수의 보장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감사 수행.

1.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작년 말 기준 한국 내 TB 가맹사업을 지원하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이사 및 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3 년 12 월 31 일	3	12(임원 포함)

1.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가맹본부 및/또는 그 계열회사들은 본건 공개서 일자로부터 최근 삼(3)년간 본건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계	회사명	구분	기간	주된 사업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YUM! Brands, Inc.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1997 년~	연결기준으로 자사의 5 개 브랜드에 대한 특정 서비스의 제공
	Yum! Asia Franchise Pte. Ltd.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2008~	연결기준으로 아시아 소재 계열회사 에 대한 특정 서비스 제공
	Pizza Hut, LLC (자회사들 및 계열회사들)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1958 년~	그 전임 회사들과 함께 피자, 파스타 및 기타 이탈리아 스타일 요리의 판 매를 위한 점포의 운영, 가맹사업권 및 라이선스 허여 사업을 영위
	KFC Corporation (자회사들 및 계열회사들)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1952 년~	그 전임 회사들과 함께 “KFC” 레스토랑 운영 및 가맹사업권 허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패스트 푸드 치킨 제품 및 부요리 제품 서비스를 전문 으로 함

관계	회사명	구분	기간	주된 사업
	Taco Bell Corp.(및 계열회사들)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1962 년~	“타코 벨”이라는 중저가의 멕시코 스타일 체인점 레스토랑 운영 및 가맹사업권 허여 사업을 영위
	Pizza Hut Asia Pacific Franchise Pte, Ltd.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2014 년~	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및 북아시아 일부 지역의 피자, 파스타 및 기타 이탈리아식 푸드 코너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피자헛” 레스토랑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에게 서비스를 제공
	KFC Asia Franchise Pte Ltd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2019 년~	패스트 푸드 치킨 제품 및 부요리 제품 서비스 전문점 “KFC” 가맹점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서비스 제공
	Yum! Restaurants Asia Pte. Ltd.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2016 년~	“KFC”, “피자헛”, “타코벨” 중국 내 가맹점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서비스 제공
	KFC Asia Holdings LLC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2020 년~	사이드 메뉴와 함께 킷서비스 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KFC” 레스토랑 가맹
	Pizza Hut Asia Pacific Holdings LLC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2020 년~	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및 북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피자, 파스타 등 이탈리아식 푸드 코너를 전문으로 하는 ‘피자헛’ 레스토랑 가맹
	Taco Bell Asia Franchising, LLC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2020 년~	“타코 벨”이라는 중저가의 멕시코 스타일 체인점 레스토랑 아시아 가맹
	HBG Franchise, LLC	유사업종의 가맹사업경영	1969 년~	레스토랑 “더 해빗 버거 그릴” 프랜차이즈를 통해 프리미엄 햄버거, 샌드위치, 샐러드 및 관련 상품 제공

1.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첨부된 별첨 A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Taco Bell 가맹사업 현황

2.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최초의 Taco Bell 가맹 점포는 2010 년 7 월 7 일에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2.2 가맹사업의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Taco Bell Restaurants Asia Pte, Ltd.	Taco Bell	Ankush Tuli	2010. 7. 7. ~ 2023. 12. 31.	99 Bukit Timah Road #06-00 Alfa Centre Singapore 229835
--------------------------------------	-----------	-------------	-----------------------------	---

2.3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Taco Bell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국식	멕시코 푸드

2.4 최근 3 년간 사업연도말 Taco Bell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한국]

지역	2021 년 12 월 31 일			2022 년 12 월 31 일			2023 년 12 월 31 일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가맹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8	8	0	8	8	0	11	11	0
서울	6	6	0	6	6	0	6	6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3	3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2	2	0	2	2	0	2	2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참고: 국내의 모든 가맹점은 Kalisco 가 가맹점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역	2021 년 12 월 31 일			2022 년 12 월 31 일			2023 년 12 월 31 일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한국 외	81	81	0	115	115	0	142	142	0

2.5 최근 3 년간 Taco Bell 가맹점 수

[한국]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	15	0	0	7	0	8	-7
2022	8	0	0	0	0	8	0
2023	8	3	0	0	0	11	+3

* 계약 종료일 전에 영업을 종료한 지점입니다.

가맹점 목록은 **별첨 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내의 모든 가맹점은 Kalisco 가 가맹점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3	29	0	1	0	81
2022	81	38	0	4	0	115
2023	115	35	0	8	0	142

2.6 Taco Bell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모두 2 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점포)/직영점의 수*		
					2021	2022	2023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KFC		해당없음	음식점업	201/0	192/0	197/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피자헛		20080100397	음식점업	403/0	393/0	395/0

※ 한국 외 당사 특수관계인의 현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2.7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사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업연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1	385,631,564	21,196,516	1,676,511,306	68,106,501	511,786,186	7,470,183	
서울	6	985,789,501	13,539,487	1,357,995,648	24,372,072	529,975,556	7,470,183	
부산	0	-	-	-	-	-	-	-
대구	0	-	-	-	-	-	-	-
인천	3	-	-	-	-	-	-	5개 미만
광주	0	-	-	-	-	-	-	-
대전	0	-	-	-	-	-	-	-
울산	0	-	-	-	-	-	-	-
세종	0	-	-	-	-	-	-	-
경기	2	-	-	-	-	-	-	5개 미만
강원	0	-	-	-	-	-	-	-
충북	0	-	-	-	-	-	-	-
충남	0	-	-	-	-	-	-	-
전북	0	-	-	-	-	-	-	-
전남	0	-	-	-	-	-	-	-
경북	0	-	-	-	-	-	-	-
경남	0	-	-	-	-	-	-	-
제주	0	-	-	-	-	-	-	-

※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매장의 구체적인 매출액 현황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 트래킹 시스템인 **FACTS**에 입력하고, **Yum!** 재무팀에서 매주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1	2,408

*폐점 및 재개점으로 인하여 다음의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인천공항 탑승동점 2021.12.31.~2023.3.15, 인천공항 서편점, 2021.12.31.~2023.2.15., 인천공항 동편점 2021.12.31.~2023.1.19.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매장의 구체적인 평균 영업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2.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사항 없음

2.10 광고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가맹금은 점포 개점 이후에 귀하로부터 지급받습니다.

2.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3.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한 내역:

해당사항 없음

3.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해당사항 없음

3.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해당사항 없음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Taco Bell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화 63,800 달러를 초기수수료(최초 가맹금)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인허가, 부동산, 건축/부지 공사, 장비/간판/장식, 개점제매고, 추가자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귀하가 가맹 점포를 건설하고 개점하기 위해 예상되는 초기 투자금액을 열거한 것입니다.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비용종류	금액	지급대상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예치대상 여부	비고
초기 수수료(최초가맹금)	미화 63,800 달러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반환되지 않음.	가맹사업법 제 6 조의 5 에서 정하는 가맹금 예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 또는 계약 체결 이후 2 달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지급함.)	초기수수료(최초가맹금)는가맹점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반환되지 않음.
초기 교육	초기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나 귀하는 모든 교육생의 교통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함.	교통 및 체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제 3 자	교통비 등 실비이므로 반환되지 않음	가맹사업법 제 6 조의 5 에서 정하는 가맹금 예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서 제 7 조 참조

2)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비용종류	금액	지급대상	예치대상 여부	비고
부동산 ¹	미화 100,000 ~ 1,000,000 달러 예치 및 보증금 (추정금액,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서, 예치금은 필요에 따라 조정될 것임.	부동산 임대인	예치하지 않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해당사항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면적 3.3m²당 금액을 산출한 기준 평수는 약 140 m²입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 ² 당 금액	지급 대상	반환 조건	비고
----	------	----	-------------------------------	----------	----------	----

총계		미화 1,250,000 달러(추정금액)				
인허가 ²	인허가발급 기관	미화 100,000 달러(추정금액)	미화 2,357 달러 (추정금액)	제 3 자	라이 선스 및 인 허가 취득 을 위 하여 제 3 자에 게 지 급되 는 사 항이 므로 반환 되지 아니 함	
건축/부지 공 사 ³	건축 및 부 지공사용역 제공자	미화 300,000 달러(추정금액)	미화 7,071 달러 (추정금액)	제 3 자	건축 공사 를 위 하여 제 3 자에 게 지 급되 는 사 항이 므로 반환 되지 아니 함	
장비/간판/장 식 ⁴	장비/간판/ 장식업자	미화 200,000 달러(추정금액)	미화 4,714 달러 (추정금액)	제 3 자	실제 발생 한 비 용에 대하 여 제 3 자 에게 지급 되는 사항 이므 로 반 환되 지 아 니함	
개점 재고 ⁵	지정된 공급 업자	미화 50,000 달러(추정금액)	미화 1,179 달러	제 3 자	상동	
추가 자금 ⁶	필요한 용역 을 제공하는 제 3 자	미화 500,000 달러의 운영자본 (추정금액)	미화 11,786 달 러(추정금액)	제 3 자	상동	

***주:**

위 1 내지 4 항목에 명시된 비용은 예상금액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사업 개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1. 토지 비용은 그 규모와 소재지 및 귀하가 부지를 구매 또는 임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임대료는 서울 소재 부지의 임대료에 대한 예치금 및 보증금을 말합니다. 임대차가 비율 임대료 조건(**percentage rent**)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승될 것입니다. 기본 임대료에는 세금, 보험 및 기타 부지 임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금액이며 따라서 당사는 귀하에게 사업개시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2. 동 금액에는 지질공학적 서비스, 재료 테스트, 건축학적 서비스, 민사 서비스, 인허가 처리, 검사, 공공 시설 비용, 특별 임팩트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건축 및 부지 공사 비용 예상금액은 서울에서의 개발을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실제 비용은 해당 지역의 건축 및 용도관련 법령, 지리학적 지역에서의 추정 건축비용, 부지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귀하가 건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금액이며 따라서 당사는 귀하에게 사업개시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4. 장비, 간판 및 장식 비용은 귀하의 점포의 규모, 설비, 가시성 및 장소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140 평방미터 면적을 기준으로 한 예상금액이며 따라서 당사는 귀하에게 사업개시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5. 개점 시 재고 비용은 개점 첫 주의 영업에 대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것입니다. 비용은 귀사의 실제 판매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6. 추가 자금에는 개업 초기 삼(3)개월간의 점진적인 운영 비용, 즉 사업 초기 단계에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와 같은 항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추정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금액이며 따라서 당사는 귀하에게 사업개시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용과 사업의 초기 단계에 수반되는 점진적인 추가 비용 모두는 귀하의 관리 기술, 경력 및 사업 통찰력, 점포 직원들의 개발 경험 및 효율성, 지역 경제 조건, 지역 시장 조건, 귀하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임금 수준, 경쟁 및 해당 기간 동안 도달할 수 있는 판매 수준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가 직접 선정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Taco Bell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재료, 설비, 용역의 상세는 별첨 E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4.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아래 표는 귀하가 각 점포별로 가맹본부에 지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비용 종류 ^{1,2}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다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계속 수수료	가맹본부	수입의 6% 해당 금액 (월 매출액을 기초로 계산함)	다음 달 10일	가맹사업법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반환되지 아니함.	"수입" 은 가맹 점포에서 판매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귀하의 가맹 점포가 수령한 모든 총 수령액을 의미하며, 법률상 면제되거나 또는 사실상 면제되는 판매세 또는 기타 세금만 제외된다.
광고 부담금	제 3 자	수입의 5% 해당 금액 (연 매출액을 기초로 계산함)	비용 발생 시점에 지급	가맹사업법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반환되지 아니함.	귀하는 승인된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동 자금 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가맹본부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지출한다.
마케팅 자료 선택 사항	제 3 자/가맹본부	해당 발생 비용	비용 발생 시점에 지급	가맹사업법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반환되지 아니함.	가맹본부는 귀하에게 마케팅자료의 판매를 제안할 수 있으며 귀하가 이를 구매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비용 종류 ^{1,2}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다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계속 및 추가 교육비	제 3 자/가맹본부	출장비 및 생활비	비용 발생 시점에 지급	가맹사업법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반환되지 않음.	가맹본부는 기타 연속 또는 추가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과정도 있다. 제 7 조 참조
공급자 체인 관리 비용 (선택사항)	제 3 자	현행 수수료: United Foodservice Purchasing Co-op, LLC ("UFPC") 가 협상한 계약에 의거하여 귀하가 구매하는 품목의 3%	비용 발생 시 지급	실제로 소요되어 제 3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서, 반환되지 않음	귀하는 UFPC 의 구매업무를 통하여 협상된 조달품의 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UFPC 는 Yum 의 승인된 구매대리인이다. 공급자들은 자신의 청구서에 이에 참여한, 가맹사업권이 허여된 Yum 소유 레스토랑과 가맹 점포에 수수료를 추가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수수료는 (가맹 점포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동 수수료에는 변경 조건이 적용된다.
공급자 감사 비용	제 3 자	감사비	비용 발생 시점에 지급	실제로 소요되어 제 3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서, 반환되지 않음	요구되는 건강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의 원재료/식품/물품 공급자에 대한 감사가 요구된다.

비용 종류 ^{1,2}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다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감사비용	제 3 자	감사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함. 단, (i) 여하한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미지급분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귀하는 상기 미지급분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ii) 해당 미지급분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2%에 이상인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동 감사로 인하여 부담한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발생 시점에 지급	감사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함. 단, 여하한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미지급분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귀하는 상기 미지급분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해당 미지급분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2%에 이상인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동 감사로 인하여 부담한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실제로 소요되어 제 3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가맹본부는 귀하의 재무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법률준수 비용	제 3 자	필요 금액	비용 발생 시점에 지급	실제로 소요되어 제 3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귀하는 가맹점계약 준수에 필요한 동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부담금	가맹본부	법정 최고이율	실제 연체되어 비용 발생 시점에 지급	금원의 성격상 반환되지 아니함	귀하가 허용된 기간 내에 여하한 지급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

비용 종류 ^{1,2}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다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점포환경개선비용	제 3 자	정보공개서 7.1 참조	비용 발생 시점에 지급	실제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 3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않음	정보공개서 7.1 참조

***주:**

1.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지급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상환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가맹점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을 미 달러화로 아래 지정한 은행 계좌로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Citibank N.A. Singapore (Swift Code: CITISGSG) 또는 가맹본부가 수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지정하는 기타 기관

Bank Account: 0-860083-035

또는 가맹본부가 수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지정하는 계좌

귀하는 여하한 공제나 상계 없이 또한 법률상 요구되는 바를 제외하고 해당 지급액에 부과되는 어떠한 세금 공제 없이 모든 지급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직접 지출하는 광고부담금을 제외한 상기 모든 수수료는 가맹본부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하여 징수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는바,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회계, 재고 등 관리	가맹본부는 사업에 관한 기록을 조사 및 감사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	수시	가맹계약서 3.3 조, 10.2 조

4.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갱신하기 위해서는 미화 31,900 달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종류	금액	비고
갱신 수수료	미화 31,900 달러	매년 4월 1일에 US CIP 조정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조정됨. 갱신일 직전에 조정된 금액이 각 가맹 점포의 갱신 시에 부과됨. 기간의 만료시점(즉,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이 갱신일이 된다.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Taco Bell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경비에 가맹 점포당 미화 8,900 달러, 동시에 하나 이상의 가맹 점포 양도 시 최고 미화 1,000,000 달러를 한도로 하는 수수료를 더한 금액(가맹사업권 허여일로부터 매년 4월 1일자 기준 US CIP 조정을 조건으로 함. 가맹점계약 양도 시 또는 귀하의 소유권 양도 시에 부과됨)을 양도수수료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제 5.7 항에 나와 있습니다.

3) 경업금지기간

귀하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한국에서 12 개월동안 Taco Bell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한은 한국의 관련법령 및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하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1 조)

-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지급한다.
- 가맹본부의 기타 서면 합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모든 상표 및 시스템 재산의 사용을 중지하고, 달리 가맹본부 또는 시스템과의 계열 또는 제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중지한다.
-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표장을 부착한 모든 물품과 모든 전유적인 비품을 처분하거나 가맹본부에 인도한다.
- 가맹본부가 그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가맹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제거한다.

주. 제 16.1 조항 참조

5)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본 계약은 가맹사업자와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의 이익이 되며, 가맹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가맹계약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가맹사업자에 의해 제 3 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자가 당해 양도 통지를 수령함과 동시에,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의 모든

의무로부터 면책되고, 가맹계약자는 관련 통지에 기재된 양수인 또는 승계인과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동안 가맹사업자가 등록된 상표권 등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연장할 것입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한국내 가맹사업자가 체결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5.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맹본부는 어떠한 사업장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에게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가맹 점포를 개발할 부지 선정에 대하여 독자적인 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는 여하한 부지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 점포 운영상 사용할 여하한 식품 물자, 원료 또는 장비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므로, 귀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아래 품목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도 승인된 공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된 거래상대방을 통해 **Taco Bell**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상품, 설비 등을 구입할 의무는 있는바, 아래는 당사(가맹본부)가 거래를 권장하는 거래상대방 및 품목입니다. 다만, 귀하는 아래와 같이 거래를 권장하는 거래 상대방 이외에 다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승인해 줄 것을 사전에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로부터 승인되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 사항 없음(가맹본부는 귀하가 거래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으며,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5.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귀하는 가맹본부의 조달 부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협상된 물자의 구매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Yum 시스템의 공급자 체인 관리 전문기술을 사용하여 Yum의 미국 국내 브랜드, 귀하의 지역 또는 기타 여러 지역 또는 Yum 시스템을 전체로 통합한 대규모 구매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와 Yum이 협상한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자는 레스토랑 또는 점포에 대한 통상적인 공급 청구서의 일부로써 참여한 모든 가맹점사업자들, 라이선스 받은 회사 소유 레스토랑 및 점포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아래의 상품에 대하여 공급자는 위 수수료를 가맹본부/Yum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본부가 협상한 공급계약에 의거하여 귀하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현재 구매 품목 가격의 3% 해당 금액입니다. 가맹본부는 동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급 물량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공급자 체인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제품의 공급자들은 요구 받은 제품 사양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본부의 승인 공급자 목록에 새로운 공급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받은 새 공급자는 가맹본부/Yum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적용되는 모든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가맹본부/Yum이 협상한 계약을 통하여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식품 물자, 원료, 포장재 및 장비와 점포의 공사 및 운영에 사용되는 기타 품목들입니다. 귀하는 승인된 공급자 및 유통업체로부터 직접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자 체인 관리를 통하여 조달할 수 없는 모든 품목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는 “공급자 체인 관리” 시스템하에서 귀하에 대한 그러한 판매의 결과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귀하에 대한 판매를 대가로 (물론, Yum 소유 레스토랑은 공급자가 자신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모든 가맹점사업자들 및 회사 소유 레스토랑에 대하여 적용하는 수준 보다는 낮은 가격을 적용 받는 것은 제외하고) 공급자로부터 더 낮은 가격 혜택이나 할인을 받지 않습니다.

5.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제한

각 가맹 점포에서 귀하는 가맹본부가 승인한 제품 및 서비스 (“승인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가맹 점포에서 승인 제품 이외의 여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리, 출시 또는 판매하거나 가맹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점포에서 영구적, 한정적 및 정기적 메뉴 제품으로 제공되어야 할 승인제품과 그 시기를 수시로 지정합니다. 가맹본부는 귀하에게 통지하여 언제든지 승인 제품에 대한 추가, 변경 또는 철회를 행하거나 신제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상기와 같은 변경을 행할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상의 제한도 없습니다. 귀하는 통지에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변경, 철회 및 추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거래 상대방(고객)에 대한 제한

가맹본부는 귀하가 가맹 점포에서만 승인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는 조건 이외에는 귀하의 승인 제품 판매 대상인 고객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습니다.

3) 가격결정에 대한 제한

귀하는 가맹본부가 수시로 고지하는 소매가격의 상한 하에서 취급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할 것을 권합니다.

5.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준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거나 동일한 업종의·가맹점을 개설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중저가의 멕시칸 스타일 체인점 레스토랑 관련 가맹사업	Taco Bell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쇼핑몰 내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쇼핑몰의 총 면적이 500,000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입점한 해당 쇼핑몰 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점하거나 새로운 가맹점 운영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쇼핑몰의 총 면적이 500,000 평방미터~1,000,000 평방미터 사이인 경우, 가맹본부는 1 개의 가맹점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의 총 면적이 1,000,001 평방미터~1,500,000 평방미터 사이인 경우, 가맹본부는 2 개의 가맹점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의 총 면적이 1,500,001 평방미터~2,000,000 평방미터 사이인 경우, 가맹본부는 3 개의 가맹점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 500,000 평방미터의 쇼핑몰 면적이 추가될 때 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가맹본부는 추가 가맹점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쇼핑몰 내에 입점하지 않은 경우, 반경 500 미터 이내를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보호 반경 500 미터 이내에 쇼핑몰이 포함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요인으로 영업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의 현지 시장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의 재조정 사유 및 영업지역 구획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② 영업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현저한 인구통계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 재조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를 문서화한 실행 사본을 보내고, 가맹점사업자는 위
③ 소비자 취향의 변동을 원인으로, 영업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의 가맹사업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사본에 서명 후 가맹본부에 발송하여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다만, 동의가 없는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우 가맹본부는 10일 정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제안할 수 있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가맹점 이외의 지역에서 본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음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5 가맹본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본부의 국내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온/오프라인 독점 판매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5.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아래 표의 내용은 가맹점 계약 조항 중에서 주요 조항인 계약의 기간, 갱신, 연장, 해지, 개정에 관한 조항을 기술한 것입니다.

규정	가맹점계약상의 조항	요약
가맹사업권 기간	1.1; 부록 B	10 년.
기간의 갱신	18; 부록 B	10 년.
귀하의 갱신 요건	18; 부록 B 및 부록 C11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 시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만료 전 최소 90 일부터 180 일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서면 갱신 요청에 15 일 이내에 거절 이유를 서면 통지함으로써 동 요청을 거절하지 않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러한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90 일부터 180 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현재 교육프로그램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맹점 매니저, 모든 지역 매니저 및 지배인은 그 당시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승인한 현장관리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직전 24 개월 동안 브랜드 운영 기준 (본건 기준 및 매뉴얼에 명시됩니다.) 위반을 통보받고 요구된 기간 동안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직접 또는 브랜드 마케팅 협동조합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소비자 P&L 추적 프로그램에 수시로 참여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로서 가맹계약 제 15.2(a)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권을 달리 해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만료 시, 가맹계약 또는 가맹사업

		자(또는 그 각각의 계열회사)간에 체결된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2 개우러 동안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적시에(일시적 또는 중대하지 않은 지연이 없는 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보증인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열회사도 가맹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표장 및 시스템 재산, 기밀유지, 시스템 재산 및 시스템 영업권 보호 또는 양도 및 청구와 관련된 가맹계약 조항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만료 전에 당시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90 일전까지 가맹본부에 갱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정부 인가와 문서를 준수하고 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귀하에 의한 해지	해당없음	관련 조항 없음
유예기간 적용 없이 가맹본부에 의한 해지	15.1 및 부록 C9	15.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또는 제 15.3 조에 명시된 구제수단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불능이 되거나 임시 또는 최종 여부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본 건 가맹사업에 대한 청산인, 관재인, 관리인, 또는 관리자 또는 수탁인(또는 현지에서 이에 준하는 자)이 선임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청산 신청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본 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형사상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연속 7 일 이상 본 건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 단 가맹점사업자가 예방과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전쟁, 민간 소요, 화재, 홍수, 지진, 천재지변, 노동쟁의나 불안, 또는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그와 같이 포기 또는 중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동 승인을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않습니다.; 또는 가맹점사업자나 보증인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추후 위반 시 가맹본부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어느 보증인이 본 계약 조건이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및/또는 보증인 (또는 그들 각각의 계열회사)간에 체결한 본건 사업 관련 기타 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보증인이 제 1.3 조, 제 5.1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이(2) 개월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가맹본부에 의한 해지	15.2 및 부록 C9, 15.3 및 15.4	15.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i) 위반에 대한 1 차 통지일로부터 2 개월 이상의 시정기간(“시정기간”) 및 (ii) 시정기간 동안 위반에 대한 2 차 통지의 발송을 전제로 하여, 가맹점사업자 또는 관련 보증인이 시정기간 내에 가맹본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시정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발송되는 3 차 통지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령한 즉시 발생하며, 가맹본부는 제 15.2 조에 명시된 구제수단을 해지 통지와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기일에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이 제 12.3 조에 언급된 보증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보증인이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건 사업, 본건 표장, 본건 시스템 또는 시스템 재산의 영업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하한 범죄, 불법행위 또는 행위를 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작성된 기록을 보관하거나 가맹본부에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본건 표장 또는 시스템 재산, 이와 관련된 영업권 또는 가맹본부나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그 소유권의 유효성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간(또는 그들 각각의 계열회사들 간, 또는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의 계열회사 간)에 체결된 기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보증인이 본 계약의 기타 조건(제 15.1 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또는 본건 사업과 관련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및/또는 보증인(또는 그들 각자의 계열회사들)간의 기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본 제 15.1(g)조의 목적 상 “기타 계약”이란 가맹점부지계약, 가맹점계약, 기본가맹점계약, 주주간계약, 보증, 면제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본 조항에 구속되는 계약으로 한정된다. 또한 “기타 계약”이 가맹점 관리자의 통제에 따른 가맹점별 운영상의 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가맹점부지계약, 가맹점계약 또는 기본가맹점계약인 경우, 제 15.1(g)조는 이전의 24 개월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두 개의 다른 가맹점과의 계약을 여하한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는; 가맹사업자의 주주들과 가맹본부간에 체결한 본건 계약들의 조건에 반하여 주주에 대한 지분 또는 주식을 매도, 양도, 증여하거나, 부담 또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15.3 제 15.1 조 및 제 15.2 조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제 15.1 조 및 제 15.2 조에 따른 권리를 해치지 않고 이에 더하여,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로서 제 18 조에 의해 허여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갱신권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또는 그들 각자의 계열회사들)간에 체결된 기타 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시스템이나 컨셉트와 관련하여 개발 또는 선택의 권리를 해지할 수 있다.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로서 제 18 조에 의해 허여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갱신권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또는 그들 각자의 계열회사들)간에 체결된 기타 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시스템이나 컨셉트와 관련하여 개발 또는 선택의 권리를 해지할 수 있다.가맹점사업자의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법
--	--	---

		를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합리적인 실경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위반을 시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고 동 비용은 가맹본부의 서면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들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 소모품, 재료,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합리적인 실경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위반을 시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고 동 비용은 가맹본부의 서면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들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 소모품, 재료,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5.4. 가맹본부의 제 15 조에 따른 권리행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유하는 기타 권리 및 구제수단에 추가되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가맹점계약의 수정	24.6	본 계약의 조건은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기준 및 지침서가 제 3.2 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수시로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 .

5.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아래 표의 내용은 가맹점 계약 조항 중에서 주요 조항인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에 관한 조항을 기술한 것입니다.

규정	가맹점계약상의 조항	요약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불가능
가맹본부에 의한 양도	24.3	본 계약은 가맹본부와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의 이익이 되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가맹본부에 의해 제 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해 양도 통지를 수령함과 동시에, 가맹본부는 본 계약의 모든 의무로부터 면책된다(가맹본부의 양수인이 부담한다).

귀하에 의한 양도- 정 의	14	본건 사업, 가맹점계약 또는 가맹점계약상의 이익의 매도, 양도 또는 증여; 가맹점사업자 사업체에 대한 지분 또는 주식의 매도, 양도, 증여 또는 여타 당사자에 의한 부담 또는 질권 설정; 가맹점계약 발효일 현재 주주가 아닌 여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 사업체의 신주 발행; 가맹점사업자의 구조조정, 회사정리, 합병 또는 그 구조나 재무조건상의 기타 중대한 변동;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지배상의 변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해당없음	불가능
귀하에 의한 양도에 대한 가맹본부의 승인	14.1 내지 14.3 및 부록 B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이 요구된다. 또한, 라이선스를 허여 받은 사업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배상의 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 사업체의 구조조정, 회사정리, 합병 또는 구조나 재무상의 중대한 변동에 대하여도 동 요건이 적용된다.
가맹본부의 양도 승인 조건	14.2 및 14.3 부록 B	가맹본부의 절차 및 양도수수료 지급의 준수 등 (제 2a 조 참조). 제안된 양수인이 승인을 받게 되면, 가맹본부는 제안된 양수인과 보증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계약상의 라이선스와 보증인의 모든 직무 및 의무를 수락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의 체결을 요구한다.
귀하의 사업 인수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선인수권	14.4	가맹점사업자가 지배권 변경 사유와 관련된 제안을 하거나 이를 알게 되어 본건 사업, 가맹점, 본 계약, 본 계약상의 이권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이권이나 지분을 매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합의되거나 제안된 조건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매수인/양수인 으로서 동일한 매매대금 및 기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 또는 양도하기로 진행하거나 그와 같이 진행할 제 3 자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능한 한 빨리 가맹본부 또는 피지명 제 3 자에 대한 매도 또는 양도를 완료하도록 성실히 수행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 14.2 조 및 제 14.3 조에 따라 예정 양수인에 대한 서면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이를 신청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이러한 권리 행사를 거부하는 가맹본부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양수인에 대한 매도 또는 양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조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우선매수권은 회복된다. .
가맹본부의 귀하의 물자, 장비 또는 표지 구매 선택권	16.3	본 계약 해지후 60 일 기간 동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보유한 비품을 원가에 그리고 가맹점에 있는 장비 또는 표지를 권리제한 또는 기타 담보권 없이 장부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가격으로 또는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수할 제 3 자를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5.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아래 표의 내용은 가맹점 계약 조항 중에서 주요 조항인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기술한 것입니다.

규정	가맹점계약상의 조항	요약
가맹사업 기간 동안 경업금지 약정	13.1; 부록 B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기간동안,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열회사가 자신이 직접 또는 구성원, 주주, 이사, 직원, 대리인, 파트너, 합작투자자, 고문, 컨설턴트 또는 대주의 자격으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불합리하게 유보될 수 없음)없이 식품의 도소매 준비, 마케팅, 판매(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가상, 무(無)브랜드 또는 다크키친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함), 유통 또는 배달 등 부록 B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 제한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이권을 갖거나 그와 같은 사업 서비스를 수행 또는 영위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단, 애그리게이터, 배달 사업 및/또는 다음 제품군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전적인 재량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a) 피자 (b) 피자과 파스타 (총칭) (c) 인스턴트 닭고기 제품 (d) 멕시칸 식품 또는 (e) 소고기버거 제품
가맹사업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경업금지 약정	13.2; 부록 B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 해지 또는 양도 후 부록 B에 명시된 계약 기간 후 제한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열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구성원, 주주, 이사, 직원, 대리인, 파트너, 합작투자자, 고문, 컨설턴트 또는 대주의 자격으로, 본건 사업상 표장을 부착하여 판매된 식품과 유사한 제품의 준비, 마케팅 또는 판매 등 부록 B에 명시된 계약 기간 후 제한지역 내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이권을 갖거나 그와 같은 사업 서비스를 수행 또는 영위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영업시간 및 영업일 수 제한	해당없음	영업시간 : 해당없음 영업일수 : 해당없음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해당없음	권장 종업원 수 : 해당없음 영업장 근무 요부 : 해당없음 가맹점 인력 부재시 대체 근로자 요부 : 해당없음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해당없음	관리감독 항목 : 해당없음 절차 : 해당없음 빈도/시기 : 해당없음 담당부서 : 해당없음

5.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가맹본부와 비용분담하는 광고 및 판촉활동은 없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5.10 영업비밀 보호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기간 및 그 이후에도 본 계약 및 관련 계약의 조건, 기준, 지침서, 시스템 재산을 포함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자료 및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기간동안 알게되는 시스템, 시스템 재산, 승인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가맹본부의 사업과 업무에 관한 기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가맹점사업자는 본건 사업의 목적상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 한하여 동 직원이 지침서 및 가맹본부의 승인하에 공개된 기타 자료 또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조건하에 지침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기밀준수 의무는 공지된 정보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기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사전에 알게된 정보 또는 법률이나 법원 또는 법정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맹점사업자는 기밀준수 의무의 위반이 가맹본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또는 기타 금전적 배상에 추가하여 가처분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나 즉각적인 구제수단도 행사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5.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수행,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본부의 권리 행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여한 위임권 행사 등 포함),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여하한 대리인, 대표, 계약자, 라이선시 또는 보조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일체의 청구, 채무, 손실, 비용 및 손해 (변호사 비용 및 경비등)에 대해 가맹본부, 그 계열회사 및 그들의 대리인, 직원, 이사들, 승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그들이 계속 면책되도록 합니다. 단, 오로지 가맹본부의 과실 또는 실수로 인하여서만 발생한 청구, 채무, 손실, 비용 또는 손해에 관한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그러한 고의의 행위가 가맹본부의 Global Code of Conduct, Standards and Policies 에 반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6.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가맹본부는 한국을 Taco Bell 가맹 점포 개발을 위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가맹본부는 귀하를 이 시장의 가맹점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귀하가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잠재적 부지를 확인하고, 가맹본부가 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면 입지계획, 제안된 부지 레이아웃 계획, 간판 제안, 관련 임대 세부사항, 부지 사진, 제안된 컨설턴트의 신분 및 기타 문서를 포함하는 부지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승인 이전의 부지선택과정에서 귀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부지 타당성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된 부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일단 최종 부지에 대하여 허가한 경우, 임대차의 경우, 귀하는 임대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완전한 매입의 경우, 귀하는 부지를 취득하고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귀하는 가맹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 /장비 구입: 부지를 확보하는 즉시, 귀하는 가맹본부에게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 및 설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건설 및 설계 계획이 사업기준 및 사업설명서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계획을 제출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귀하는 공사를 개시하기 위한 입찰공고(call for a tender)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귀하는 또한
 - 현지 기관에 모든 토지이용계획신청 및 기타 인허가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 가맹본부가 명시한 필요한 모든 장비의 주문이 이루어졌음을 보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완공 / 가맹 점포 개점: 장비의 인도 및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가맹본부는 제7조에 기술된 방식으로 귀하의 경영진 및 직원들에 대한 모든 관련 교육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점포의 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점포의 개점 준비가 완료됩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가맹희망자로부터 문의 접수	D-450	
가맹희망자 승인	- 가맹희망자에 대한 확인 및 인터뷰 시행 - 가맹희망자 승인	D-450~270	
사업 계획	향후 3-5년 간 사업계획서 제출 예상	D-450~27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점포 입지 확인 - 점포입지선정	D-270~150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승인받는 즉시	
가맹계약서 작성	- 작성된 가맹계약서 초안은 가맹사업자에게 사전제공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승인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D-270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D-25~14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 또는 계약 체결 이후 2달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초기 수수료 미화 63,800 달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가맹금 예치 제도는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파트너는 모든 도면을 제출하여 가맹본부 설계팀의 승인을 받아야 함	D150~120	
점포 공사 및 개조	- 점포 공사 및 개조 시작, 완료	D-90~11	
설비	- 설비 수령 및 설치	D-27~11	

	- 설비 설치자 교육		
채용 및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0~26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6.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규정	가맹점계약상의 조항	요약
통합 조항	24.1	가맹점계약은 모든 사전 협상, 합의 또는 양해사항에 우선한다.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19, 부록 C12	귀하와 가맹본부는 상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가맹본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속력 없는 조정을 위하여 상호 합의한 조정인에게 해당 분쟁을 제소한다.
재판지 선택	24.7 및 부록 B	귀하는 한국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
준거법	24.7 및 부록 B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7.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본부는 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ii)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13조의2). 이 때 가맹본부는 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소요 비용의 100분의 20, i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소요 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합니다(“가맹본부부담액”, 법 제12조의2 제2항, 동 시행령 제13조의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i)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i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2).

다만 가맹본부는 i)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ii)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점의 개량, 개조, 개선, 리모델링 또는 확장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는 환수 가능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없음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7.3 경영활동 자문

해당없음

7.4 신용제공 등 내역

가맹본부는 귀하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신용 공여를 하지 않으며, 또한 제 3 자로 하여금 귀하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용 공여를 할 것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7.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8.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8.1 교육 및 훈련의 주요내용

초기 교육은 귀하의 레스토랑 매니저 및 직원들의 주요 팀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의 계열회사인 Taco Bell 이 미국에서 이행할 것입니다. Taco Bell 의 “STP” 또는 Setting the Pace 교육 프로그램은 약 6 주 내지 8 주(피교육자의 지위에 따라 다름) 동안 지속되며, 교실 연수 및 가맹본부/Taco Bell 이 인증한 교육 레스토랑에서의 현장 연수 모두로 구성됩니다. 가맹사업 신청인들을 위해, 프로그램은 귀하의 가맹 점포 개점 예정일로부터 최소 1 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사업설명서, 팀원교육카드 (Team Member Training Cards) 및 기타 코스 지정 제출물(handouts)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첨 D 에 명시된 도표는 귀하의 주요 팀원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신입 직원들은 점포 내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응대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기본 팀원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한국에서 매니저 직위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개발 챔피언”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또한 수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준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 교대 운영의 주도
- 레스토랑의 주도
- 복수 레스토랑의 주도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또한 지속적으로 기타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워크숍의 이행, 회의의 소집 또는 귀하의 마케팅, 재정, 운영, 개발 업무를 위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가맹본부는 또한 귀하의 조직을 위한 교육 강사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귀하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직원이 교육 강사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 본 가맹사업 또는 추가 가맹사업을 위한 점포 매니저 교육은 귀하의 교육 강사의 교육을 통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요청할 경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 드립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가맹본부/Taco Bell 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개선 및 변경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육 강사 및 교육 레스토랑은 가맹본부/Taco Bell 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교육 강사들은 위에 언급된 영역에 있어서 최소 1 년 이상의 사전 교육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합니다.

8.2 교육 및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Taco Bell 의 “STP” 또는 Setting the Pace 교육 프로그램은 약 6 주 내지 8 주(피교육자의 지위에 따라 다름) 동안 지속되며, 교실 연수 및 가맹본부/Taco Bell 이 인증한 교육 레스토랑에서의 현장 연수 모두로 구성됩니다.

가맹본부/Taco Bell 이 신제품 출시(roll-outs) 또는 기타 시스템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선택한 기타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코스는 물론, STP 및 개발 챔피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는 귀하 및 귀하의 레스토랑 매니저에 대하여 면제됩니다. 가맹본부/타코벨은 의무적인 교육 이외의 교육 코스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 진행 훈련과정과 선택적인 훈련과정 양쪽에 대하여, 귀하는 귀하 및 귀하의 직원들에 대한 교통비 및 생활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 모든 교육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집니다.

8.3 교육 및 훈련의 주체

초기 교육은 귀하의 레스토랑 매니저 및 직원들의 주요 팀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의 계열회사인 Taco Bell 이 미국에서 이행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신입 직원들은 점포 내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응대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기본 팀원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8.4 교육 및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이와 같은 교육 코스를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귀하의 최초 가맹 점포에 대한 가맹점계약 발표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9.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한국: 해당사항 없음

*해외 직영점은 존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모든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한국: 해당사항 없음

*해외 직영점은 존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 직영점 전체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한국: 해당사항 없음

*해외 직영점은 존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65-6333116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2023 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포괄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 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포괄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A
(Appendix A)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B
(Appendix B)

국제 가맹점 계약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C
(Appendix C)

가맹 점포 개점 일정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D
(Appendix D)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E
(Appendix E)

상품, 재료, 설비, 용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F
(Appendix F)

Taco Bell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